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8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정태, 경만선, 고병국,
김화숙, 노식래, 이태성,
이병도, 김제리, 이경선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4월 현재 189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범위 과다 등으로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과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참여와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정작 주거환경개선 등이 시급한 저층주거지는 정책에서 소외됨으로써 도시쇠퇴를 가속화시키거나 개별 건축 등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서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층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과 마을관리소, 저층주거지를 정의함(안 제2조).
-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에 있어 우선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6조).
-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방법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관리소”란 저층주거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3. “저층주거지”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관리소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목표
2.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대상지역과 선정기준

3. 마을관리소의 공간 확보 방안, 조직과 운영 체계
4. 단계별 마을관리소의 운영계획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시와 자치구 관계부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도시재생지원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방안
6.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마을관리소의 자생력 강화 방안
7.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관리소를 저층주거지내 마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관리소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전단계사업 또는 사전단계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마을관리소 관련 전문가를 마을관리소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마을관리소의 기능) 마을관리소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수리와 집수리 정보제공과 신청 등의 지원
2. 마을내 노후주택 이력관리와 집수리자원 네트워크 구축
3. 골목길 정비 등 마을환경개선과 안전 관리
4.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또는 지역자산 관리
5. 택배보관, 제설함 설치와 관리, 공구대여 등 주민생활편의 제공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
7. 다양한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9조(보고와 평가) ① 마을관리소는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마을관리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마을관리소는 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마을관리소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에서 시장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는데 평가 참여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제10조는 마을관리소 설치 지원 희망자에게 심사를 통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 전체 저층주거지의 규모, 마을의 크기 설정에 따라 소요 비용의 차이가 크고, 마을관리소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여 한정하기가 어려우며, 각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관리소의 업무를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마을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